교육부 공고 제2026-3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역 맞춤형 소규모학교 혁신 추진 지원 등 교육재정 수요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강화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의 예산 편성률 제고를 위하여 정산규정 도입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5)

나. 학교 기반의 교원 역량 개발 강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개발 관련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10)

다. 소규모학교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관련 단위비용 상향 및 정비(안 별표3)

라.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항목에 ‘목적사업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비율’ 측정단위 신설(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sogreat@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교육부령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별표 3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전전년도 보수총액 ÷ 전전년도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원 증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원 1명당 소요액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전문직원 1명당 임금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무직원 수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1명당 임금 · 사무직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무직원 1명당 임금
	공무원 · 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 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단가
	명예퇴직 교원 수	1)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전문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2. 학교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학교급별 · 규모별 학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1에 따른다.
	나. 학급경비	학급 수	∑(학교급별 학급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유치원: 학급당 8,784천원 ・초등학교: 학급당 8,352천원 ・중학교: 학급당 7,765천원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7,787천원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7,557천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16,423천원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 대안학교 － - 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7,099천원 － - 중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9,030천원 - －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8,702천원
	다. 학생경비	학생 수	∑(학교급별 학생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생당 310천원 · 초등학교: 학생당 738천원 · 중학교: 학생당 766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생당 617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774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 · 특수학교: 학생당 1,384천원

				·영재학교: 학생당 1,942천원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905천원 --중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92천원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71천원
	라. 삭제 <2020. 10. 20.>			
	마. 고교학점제 운영비	학교 수	∑(유형별·규모별 학교 수 × 단위비용)	비고 2에 따른다.
		증설 교실 수	증설 교실 수 × 단위비용	200,000천원
		전환 교실 수	전환 교실 수 × 단위비용	30,000천원
	바. 삭제 <2025. 12. 2.>			
	사. 추가 운영비	학교 수	∑{유형별·규모별 학교 수 × 단위비용}	비고 2의2에 따른다.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행정비	가. 기관 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 학교당 단위비용) + (학생 수 × 학생당 단위비용) +	·학교당 단위비용:

		및 기준 교직원 수	(기준 교직원 수 × 기준 교직원 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	9,406천원 · 학생당 단위비용: 73천원 · 기준 교직원 당 단위비용: 566천원
	나. 지방선거 경비	지방선거 경비	1)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학생맞춤 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가. 학생맞춤 통합 지원 운영비	학교 수, 평생교육시설 수	(학교 수 × 단위비용) + (평생교육시설 수 × 단위비용)	5,000천원
	나. 기초학력 진단 지원비	학생 수	학생 수 × 단위비용	1천원
	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	(학교 수 × 학교당 단위비용) + (학급 수 × 학급당 단위비용) + (학생 수 × 학생당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당·학급당·학생당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
	라.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학생 수	(학생 수 × 단위비용) + (마음건강 지원 대상 학생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당 및 마음건강지원 대상 학생당 마음건강 지원비
	마. 지역 간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 수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 면적 ÷ 해당 시·도의 학교 수) ÷ ∑(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 시·도별 학교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해당 시·도의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시·도별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바. 계층 간 균형교육복	수급자 수, 한부모가	{해당 시·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	~~3,444천원~~ 4,058천원

	지 지원비	족 지원 대상 학생 수, 차상위 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급여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 단위비용 ※ 단위비용 산정방식: $\frac{\text{표준행정수요액의 합}}{\text{전전년도 기준 과거 5개년도 측정단위 수치의 합}} \times 1.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외국어·국제계열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 2)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외국어·국제계열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 × 교육부장관이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전비율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1)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증축 또는 개축이~~증·개축 및 리모델링,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단위비용

			장관이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적용률 2)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적용률 3) 정산 결과 남는 금액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1) 신설·이전·증설 대상 학교의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폐교재산 또는 미활용 학교시설에 신설·이전하는 학교의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3) (학교복합시설 인정 연면적 × 학교복합시설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4)~~3) 정산결과 남는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임시교실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증설 교실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전환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당 매입비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바. 사립학교 이전·증설비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 2)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3)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임시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사. 청사 ~~신설·이전~~신축비	토지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Σ(연령별 유아 수 × 단위비용)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령별 지원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원 처우 수준, 교원의 학급 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당 지원액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학급 수 및 원아 수	(유치원 수 × 단위비용) + (학급 수 × 단위비용) + (원아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라. 삭제 <2015.11.5.>			
7.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초등 돌봄을 포함한다) 운영 학급 수 × 단위비용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초등 돌봄을 포함한다) 운영 학급 수 × 단위비용 3)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학급 수 × 단위비용 4)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학급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급당 운영비
	나.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수	학생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연간 수강료
	~~다. 늘봄학교 지원 삭제~~ <2026.00.00.>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에 있는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의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 학급 수 × 단위비용~~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늘봄학교 운영 학급당 운영비~~

			~~및 사립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학급 수 × 단위비용~~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시설비~~
8. 고교무상 교육 지원	가. 입학금·수업료	학생 수	1) Σ{(학생 수 × 단위비용) × (1 − 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시·도별 조례에 규정한 입학금·수업료
	나. 학교운영 지원비	학생 수	1) Σ{(학생 수 × 단위비용) × (1 − 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
	다. 교과용 도서 구입비	학생 수	1) Σ{(학생 수 × 단위비용) × (1 − 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
9. 재정 결함 보전	가. 삭제 <2025. 12. 2.>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화 지원	지원액	[(해당 연도의 해당 시·도의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 Σ(해당 연도의 시·도별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10. 교원 연수 운영·지원	가. 교원 연수 운영	교원 수	교원 수 × 단위비용	·직무연수: 400천원 ·자격연수: 2,000천원 ·특별연수(Ⅰ): 58,285천원 ·특별연수(Ⅱ): 2,000천원

	나. 교원 역량 개발	교원 수	1) 교원 수 × 단위비용 2) 학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 1명당 · 학교당 역량 개발 지원비
11. 삭제 <2025. 12. 2.>				
12.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학생 수	학생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기기 구입·사용비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구축비
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가. 인건비	교원 수 및 사무직원 수	1)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2) 사무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1) 제1호의 교원 수의 단위비용 2) 제1호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의 단위비용
	나. 운영비	평생교육시설 수	평생교육시설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당 연간 운영비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			온라인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초등학교 과정 운영	중학교 과정 운영	고등학교 과정 운영	
3학급	190,688	63,312	403,361	284,482	527,507	291,874	18,168	527,565	857,298	22,449	637,650	–	380,172	518,026	501,342	444,954
5학급	208,768	77,154	–	–	–	–		–	–		–	–	–	–	–	
6학급	218,395	87,260	455,966	312,262	576,953	322,124		584,351	996,171		687,059	611,028	411,875	552,012	540,843	

7학급	227,213	–	–	–	–	–	–	–	–	–	–	–	–	–
8학급	238,535	–	–	–	–	–	–	–	–	–	–	–	–	–
12학급	285,265	–	529,273	–	666,803	–	699,408	1,548,745	790,444	1,224,644	454,470	606,764	603,627	
18학급	–	–	601,146	–	755,642	–	779,884	2,122,481	892,636	1,358,962	510,976	665,452	662,901	
24학급	–	–	667,433	–	809,447	–	845,998	2,281,498	961,308	1,555,068	567,322	702,123	719,098	
30학급	–	–	765,789	–	869,894	–	902,938	2,872,864	1,016,530	–	650,924	741,680	767,497	
36학급	–	–	827,232	–	940,611	–	1,007,988	3,224,488	1,060,337	1,829,225	–	–	–	
42학급	–	–	885,149	–	1,030,836	–	1,089,173	3,679,662	1,101,732	–	–	–	–	
48학급	–	–	944,087	–	1,084,430	–	1,142,079	3,811,525	1,153,686	–	–	–	–	
54학급	–	–	992,372	–	1,125,469	–	1,185,883	4,222,817	1,197,456	–	–	–	–	
60학급	–	–	1,057,583	–	–	–	–	–	–	–	–	–	–	

2.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학교 유형별·규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학급 수	13학급 미만	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	29,000천원	34,000천원	38,000천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 호의 고등학교

1) 운영비

학교 유형	학급 수	단위비용	비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의 고등학교	(1) 18학급 미만	147,500천원	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급 수는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에 설치된 학급 수로 산정한다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188,000천원	
	(3) 27학급 이상	228,000천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2호의 고등학교	(1) 18학급 미만	132,000천원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168,000천원	
	(3) 27학급 이상	204,000천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3호의 고등학교	(1) 18학급 미만	66,000천원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84,000천원	
	(3) 27학급 이상	102,000천원	

2) 교육환경 구축비

학교 유형	단위비용	비고
가) 학과 내 학점제 운영 세부전공 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	(세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세부전공을 개설한 전체 학급 수) × 125,000천원	해당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시설, 설비의 설치비 등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최초 1회 지원한다
나) 학과 내 학점제 운영 부전공 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	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125,000천원	
다)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시·도의 교육감이 설립한 시설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학점제 운영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시·도의 교육감이 설립한 시설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개설한 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수 × 125,000천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의 일반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1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같은 영 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같은 영 제91조제1항의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의4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학급 수	13학급 미만	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	29,000천원	34,000천원	38,000천원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240,000천원	270,000천원	300,000천원	330,000천원

나. 통폐합 기숙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300,000천원	400,000천원	450,000천원	500,000천원

다. 삭제 <2021. 11. 16.>

라. 삭제 <2024. 11. 13.>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학교 유형	규모	단위비용
1) 특성화고등학교	가)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당 3,000,000천원

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나)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학교당 5,250,000천원
	다) 30학급 이상	학교당 7,500,000천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증설	증설학급 수 × 225,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증설	450,000천원 + [(증설학급 수−2) × 15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증설	1,200,000천원
3)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개편	개편학급 수 × 375,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개편	750,000천원 + [(개편학급 수−2) × 225,000천원]
	다) 7학급 이상 10학급 미만 개편	1,650,000천원 + [(개편학급 수−6) × 150,000천원]
	라) 10학급 이상 개편	2,250,000천원

바. 삭제 <2025. 12. 2.>

사. 삭제 <2025. 12. 2.>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558,000천원	620,000천원	682,000천원

자. 삭제 <2025. 12. 2.>

3.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교직원"이란 교원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3의2. 측정항목 제4호바목의 산정공식에서 “표준행정수요액”이란 전전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복지지원 관련 다음 각 목의 세부사업의 과거 5개년도 합산액을 말한다.

가. 삭제 <2025. 12. 2.>

나. 특수교육운영

다. 특수교육복지

라. 삭제 <2025. 12. 2.>

마. 교육비지원

바.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사. 교육복지우선지원

아. 급식비지원

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차. 검정고시운영

카. 정보화지원

4. 측정항목 제4호바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5. 측정항목 제5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집행률"이란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시설환경개선 세부사업의 전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전전년도 세출결산액의 비중을 말한다.

5의2. 측정항목 제5호~~나~~가목의 산정공식에서 “학교복합시설 ~~안정~~의 용도별 건축연면적”이란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과 중복되는 연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을 말한다.

5의3.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산정공식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6.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7. 측정항목 제8호의 산정공식에서 교육청 부담분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8. 측정항목 제8호나목 및 다목의 단위비용에서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은 전년도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9. 삭제 <2025. 12. 2.>

10. 측정항목 제10호 가목의 단위비용에서 “특별연수(Ⅰ)”은 학습연구년 지원, “특별연수(Ⅱ)는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등 외부기관 연계 전문과정 지원을 말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3]

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지원	학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 초등학교:7,500,000천원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13,000,000천원 ~~11,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4,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교장 개편 학교 수 × 단위비용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1,000,000천원 ~~500,000천원~~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 단위비용	학교(본교에 한정한다)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경우 가) 초등학교:

			5,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중등학교: 8,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운영한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하여 통합·운영하는 경우 (1) 초등학교 폐쇄: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폐쇄: 11,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학교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1,000,000천원
	~~학생 수~~ 삭 제 <2026.00.00.>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의 초과 학생 수 × 단위비용~~	~~20,000천원~~
나. 삭제 <2			

024. 11. 13.>			
다.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외부 유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	1)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도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체 시·도의 전전년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액 × 2.5% 2)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해당 시·도의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해당 시·도의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도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도별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도별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체 시·도의 전전년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액 × 2.5% ÷ 전체 시·도 수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에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증가한 시·도 수	
라.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이월률 및 불용률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4호에 따른 금액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	해당 시·도의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비율 × 단위비용	2,0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 × 단위비용	1,000,000천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율의 중위값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결산액 비율~~중)으~~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7호에 따른 적용금액	
	목적사업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비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년도 목적사업비 비율 점수 × 0.7)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비율 점수 × 0.3)}으로 산출된 값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5,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비고

1. 삭제 <2024. 11. 13.>
2. 다목의 산정공식 2)를 산정할 때에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0보다 작은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0으로 산정한다.
3. 라목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란에서 “이월률 및 불용률”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액·불용액의 합산액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100퍼센트]에 따라 산출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이월액은 [명시이월액×0.8 + 사고이월액 + 계속비 이월액×0.5]에 따라 산정하고,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하반기 교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예산은 이월액 및 예산현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한다.

4. 라목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에 따라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 / 예산현액 규모	0 퍼센트 포인트 이하	0 퍼센트 포인트 초과 1 퍼센트 포인트 이하	1 퍼센트 포인트 초과 2 퍼센트 포인트 이하	2 퍼센트 포인트 초과
1) 예산현액이 5조원 미만인 시·도	50	-15	-30	-50
2) 예산현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시·도	75	-25	-50	-75
3) 예산현액이 10조원 이상 20조원 미만인 시·도	100	-30	-60	-100
4) 예산현액이 20조원 이상인 시·도	150	-45	-90	-150

비고: 위 표에서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란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5. 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의 산정공식란에서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비율”이란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예산과목의 상반기 지출액을 그 예산과목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반기 지출목표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값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고,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6. 라목의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의 산정공식란에서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이란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값이 0.9 이상 1.1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고, 0.9

미만이거나 1.1 초과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7. 라목의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의 산정공식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결산액 비율'을 값이 높을수록 상위 순위로 산정하여 다음 표에 따른다.

(단위: 억원)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결산액 비율' 순위	1	2	3	4	5	6	7	8	9 이하
적용금액	-100	-87.5	-75	-62.5	-50	-37.5	-25	-12.5	0

※ 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관련 지출결산액은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위: 억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중의 중위값 - 실제값~~	~~0 미만~~	~~0 이상~~
~~적용금액~~	~~-10~~	~~0~~

~~※ 위 표에서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중의 중위값 - 실제값"이란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출결산액 비율의 중위값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출결산액 비중)으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2. 세입 확충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자체수입 확충	사용료·수수료 수입, 자산임대 수입, 자산매각 대금 및 이자수입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중치	

비고: 위 표에서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

결산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이 0보다 큰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0으로 산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연 락 처	(044) 203 - 6647 (044) 203 - 6648